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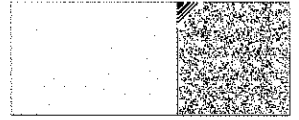
137-070

2060209-657687

형사31단독(신청)

2013-087-4-447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등 본 입 니 다

2014.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상현



사 건 2013보4 준향고

준 향 고 인

피준향고인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리)

대 리 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이재형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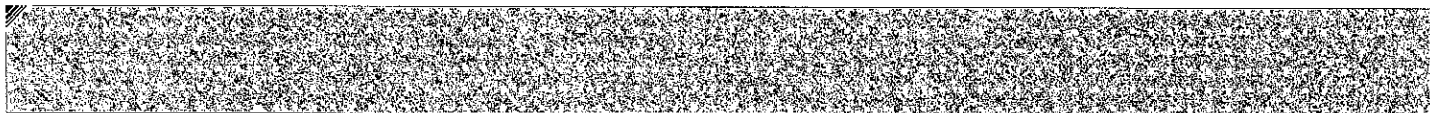
피준향고인이 2013. 3. 5. 및 2013. 3. 6. 피내사자 유가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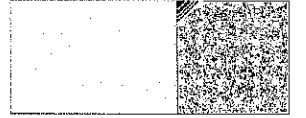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우성(본명은 '유가강'이나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유광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2010. 9. 30.경 '유광일'에서 '유우성'으로 개명하였다)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04. 4. 25.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유우성은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2011. 2.경 연세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6. 9.경부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유우성의 여동생인 유가려 역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2012. 10. 30. 15:00경 상해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한 보호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2013. 4.경까지 그곳에 거주하였다.

다. 유가려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준항고인은 2013. 1. 10. 유우성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피의사실로 체포하여 같은 달 13. 구속한 후 같은 달 29. 유우성에 대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2. 26. 유우성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라. 준항고인은 유가려의 부 유진룡으로부터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아 피준항고인에게 2013. 3. 5. '2013. 3. 5. 16:30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지위에 있는 유가려를 접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2013. 3. 6. '2013. 3. 6. 16:00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지위에 있는 유가려를 접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각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준항고인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유가려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준항고인과 피준항고인 주장의 요지

가. 준항고인 주장의 요지

비록 유가려가 형식적으로는 입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입건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가려는 피준향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상태에서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자인 준향고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실질적인 피의자 유가려와 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피준향고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준향고인 주장의 요지

유가려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신청자이자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의 참고인 지위에 있을 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임시보호시설로서 구금시설이 아니고, 유가려는 직접 보호신청을 하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는 것을 양해하였으므로 피준향고인이 유가려를 그 의사에 반하여 구금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고 구금되어 있지도 아니한 유가려에 대하여는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가려는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준향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향고는 대상 적격이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준향고인은 피준향고인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지정하여 준향고장을 제출하였고 피준향고인 대리인은 이에 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준향고인과 피준향고인 대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하면, 준향고인과 피준향고인 대리인 모두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을 한 사람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가려를 상대로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준항고인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가보안법위반 등 죄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법 제16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을 한 사람은 결국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리'이므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리'가 피준항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준항고인과 피준항고인 대리인 모두 피준항고인을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준항고인은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리)'로 표시하고, 이하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3. 판단

가. 유가려가 피의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단순히 유우성 1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에 관한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우성을 도와 탈북자 정보를 회령시 보위부 반탐부부장에게 전달하였고 반탐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 정보 수집 및 전달을 목적으로 유우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가려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은 제3자인 유우성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준항고인은

유가려에 대하여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 인입 경위, 탈북자 정보 전달 경위, 대한민국 입국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점,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 작성의 유가려에 대한 진술조서에 통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준항고인은 적어도 유우성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범죄사실로 구속되고 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2013. 3. 5. 및 같은 달 6. 무렵에는 이미 유우성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려에 대하여도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피준항고인이 유가려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가려는 2013. 3. 5. 및 같은 달 6. 당시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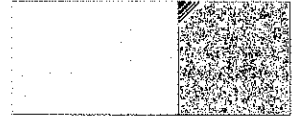
나. 준항고인에게 유가려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권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신체구속을 당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대항적 관계에 있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참조). 오히려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의 내사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금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가려가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는 이상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생활한 것을 '구금되었다'거나 '신체구속을 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준향고인에게 유가려에 대한 집견교통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임시보호 관련 규정이 이러한 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준향고인은 2013. 2. 6. 당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유가려를 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준향고가 적법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준향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가려는 2013. 2. 6. 당시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었고 준향고인은 당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유가려를 집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준향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으로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준향고는 적법하다.

라.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3. 3. 4. 2013초기170 증거보전 사건에서 유가려를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준향고인 측 변호사

가 "이번 주 안으로 변호인이 유가려 자신을 접견하러 국가정보원으로 가면 변호인을 만나겠는가요"라고 한 질문에 유가려는 "만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은 2013. 4. 26. 2013인2 인신보호 사건에서 피수용자 유가려를 심문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심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판사가 "구제청구인인 유우성 증거보전 사건에서 피수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이후 변호사가 피수용자를 접견하려고 수용시설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국정원 측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유가려는 "어제 변호사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불허처분은 피준항고인이 유가려에게 준항고인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준항고인을 만날 것인지 의향을 묻지도 않은 채 임의로 준항고인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준항고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4. 2. 21.

판사 양석용